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. 4. 17 선고 2023가단110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대륜

담당변호사 강대식, 윤범수, 조성근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6.

판 결 선 고 2024. 4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목포시 C 답 1507㎡ 중 11/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2022. 7. 15. 접수 제245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5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목포시 C 답 1507㎡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2022. 7. 15. 접수 제245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망 D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2021. 11.경 담관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2022. 5. 26.부터 2022. 7. 16.까지 E병원에서 담관암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22. 7. 16. 사망하였다. 망인의 위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면회가 불가능하였고, 망인은 2022. 7. 13.부터 사망하기까지 심한 기력저하로 식이를 거의 못하고 의식 저하로 일상적인 활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다.

나. 전남 목포시 C 답 1507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는 원래 망인의 소유였는데, 2022. 7. 15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2. 7. 13.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가 마쳐졌다.

다.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 F(상속분 3/13), G(자녀 H의 대습상속인, 상속분 2/13), 자녀들인 원고, I, J, 피고(상속분 각 2/13)가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망인은 적어도 2022. 7. 13.경 일상적인 활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,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. 5.경 이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, 2022. 5. 30.경 망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, 망인이 2022. 5. 26.경부터 병세가 악화되어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, 당시 면회가 불가능하였던 점, 달리 피고가 제출한

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망인의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다만,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나,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소유로 상속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, 피고, F, G, I, J의 공유재산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전행위로서, 단독명의로 전부에 대한 등기를 마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공유지분(2/13)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인 11/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, 이를 넘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1/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전호재